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51

2011년 6월 29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
나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15일
다. 상정일자 :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11년 6월 29일 상정·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설치한 열병합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자원회수시설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3조제4항)

○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·운영 위탁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(안 제5조 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청수)

□ 안 제3조제4항 : 전력판매 근거조항

○ 서울시에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된 소각폐열을 이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동일부지내에 SH공사(집단에너지공급사업단)에 판매하고 있으며, 판매금액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서 정한 전기요금 단가에 따르고 있음

○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는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한국지역난방공사(발전시설 없음)에 냉·난방열로 공급하였으나,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공급받은 열을 감압(208.9℃,18kg/㎠ → 177.1℃, 8.5kg/㎠) 하여 사용하고 있어, 버려지는 감압에너지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

○ 그러나 열병합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전력은「전기사업법」에서 정한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어 이에 필요한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력판매에 따라 연간 28억원의 세입증대가 예상되고 있어 조례개정의 시급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음

〈표 1〉 서울 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기 설치 현황

시설명	자원회수시설 자체 열병합발전기 설치여부	SH공사 열병합발전기 설치여부	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기 설치여부
노 원	미설치	설 치 (난방 및 전기생산)	-
양 천	설치('96.2월)	설 치 (난방 및 전기생산)	-
마 포	**설치('11.1월)**	-	미설치 (난방만 공급)
강 남	미설치	-	설 치 (난방 및 전기생산)

□ 안 제5조제1항 : 자원회수시설의 위탁근거

○「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5조제3항제5호 "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"에 자원회수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나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통합되면서 관련"2호"가 삭제되면서 시행령 제3항 제5호가 제4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 제5조 제1항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이므로 이견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**생략**

5. 토론요지 : **없음**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**구성하지 않았음**

7. 심사결과 : **원안 가결**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**없음**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**없음**

서울특별시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다만,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「전기사업법」에 의한 전력의 거래가격으로 한다.”

제5조제1항 중 “영 제35조제3항제5호”를 “영 제35조제3항제4호”로 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3조(반입수수료의 징수 등) ① ~ ③ (생 략) ④ 생활폐기물 소각에 따라 발생되는 전기의 판매금액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서 정한 전기요금 단가에 의한다. **〈단서 신설〉**	제3조(반입수수료의 징수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**다만,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「전기사업법」에 의한 전력의 거래가격으로 한다.**
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**영 제35조제3항제5호**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	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------**영** **제35조제3항제4호**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